

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(제4조제7항 관련)

피 폭 구 분	구 분	선 량 한 도
1. 유효선량	가. 임신한 경우	3개월당 1mSv(0.1rem) 이하여야 한다.
	나. 그 밖의 종사자의 경우	연간 50mSv(5rem) 이하여야 하며, 5년간 누적선량은 100mSv(10rem) 이하여야 한다.
2. 등가선량	가. 수정체	연간 150mSv(15rem) 이하여야 한다.
	나. 피부(임신한 경우 복부 표면은 제외한다) · 손 및 발	연간 500mSv(50rem) 이하여야 한다.
	다. 복부 표면(임신한 경우)	연간 2mSv(0.2rem) 이하여야 한다.

비고

1. "유효선량"이란 인체 내 조직 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방사능에 노출된 인체의 모든 조직에 대하여 각 조직의 등가선량에 해당 조직의 조직가중치를 곱한 결과를 합산한 양을 말한다. 이 경우 전신 피폭된 조직가중치의 합은 1로 한다.
2. "등가선량"이란 인체의 특정한 장기에 피폭한 선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흡수선량에 해당 방사선의 방사선가중치를 곱한 양을 말한다. 이 경우 진단용 엑스선의 방사선가중치는 1로 한다.
3.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 측정방법 등 측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측정기관의 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4. 3개월 당 선량한도는 티·앨배지를 사용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경우에는 분기 말일마다 측정한 양으로 하며, 필름배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기 동안 측정한 양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.
5. 연간 선량한도는 연도 중 처음 피폭선량을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매 연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되, 티·앨배지를 사용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매 분기 말일마다 측정한 양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.
6. 5년간 누적 선량한도는 처음 피폭선량을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간의 누적선량으로 한다.